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
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
로 3년 연장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
여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
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총리령 제 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
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5년 11월 30일”을 “2028년 11월 30일”로
한다.

총리령 제184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
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
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공익심사팀은 <u>2025</u> <u>년 11월 30일</u> 까지 존속한다. ② (생략)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</u> <u>년 11월 30일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총리령 제1845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	총리령 제1845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는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존속한다. ② (생략)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</u> <u>년 12월 31일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